

대학교육의 정책방향

-졸업제도등 대학학사관련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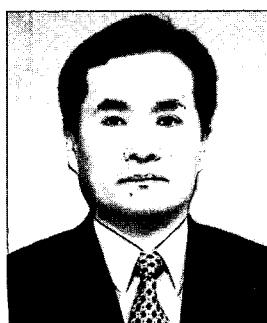
I. 머리말

1945년 해방이후 약 50여년 동안에 우리대학의 학생수는 152배, 교수수는 7 배, 교원수는 30배가 증가하였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관련지표인 "교수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수 연구논문의 국제학술지 인용횟수" 등은 선진 각국에 비하여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대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인재 양성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커다란 기여와 공헌을 해오면서 양적인 면에서 고등 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까지급성장 하였으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자본이 되는 정보화시대, WTO체제의 출범으로 대변되는 경제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거국적인 교육개혁을 선언하고 대학교육의 전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졸업이수 학점의 자율화,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실시로 인한 복수전공의 현실화, 편입학제도의 확대운영, 학위종류의 다양화 등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과대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학의 학사관리전반에 관한 것이므로, 이글에서는 공과대학의 졸업제도에 한정하기 보다는 대학의 졸업제도를 비롯한 대학의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우리부의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강병운 과장
교육부 대학학무과

Ⅱ.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진단과 향후전망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선진외국의 대학에 비하여 교육여건 수준이 크게 미흡하고, 종합대학 위주의 획일화된 대학, 공급자 중심의 대학,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대학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91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4년제 대학의 평균 학생수는 4,036명이고 일본의 경우는 5,835명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무려 9,149명이나 된다. 일본의 동경대가 63개 학

과, 미국의 예일대가 61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울대의 경우에는 92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같은 대학내에서 도 교육내용이 유사한 학과가 세분화되어 있어 학과간의 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교육에 대한 과열 양상에 따라 대입 병목 현상이 해방 이후 계속되어 오면서 대학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 모양이 어려하든간에 학생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도 자신의 생산 방식대로 교육서비스를 공급해올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개혁의 기본방향

단한 교육사회



열린 교육사회

- 공급자 중심 교육
- 획일화된 교육
- 폐쇄적·단한 교육
- 규제·통제 중심

- 학습자 중심 교육
- 다양화된 교육
- 개방적·열린 교육
- 자율·책무 중심

앞으로의 고등교육시장은 2001년을 기점으로 나타 날 대학입학 지원자의 격감, 대학시장의 완전 개방화와 더불어 경쟁의 원리가 크게 작용 하는 대전환기적 상황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에는 대학의 전통, 규모의 크기, 설립주체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변화를 능동적이고 창 의적으로 수용하여 가장 잘 적응해 나가는 대학만이 교육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III. 대학교육의 개혁방향

95년에 발표한 바 있는 5.31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기

본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창조의 산실이되고, 사회각분야가 요구하는 최적의 자질과 능력을 지닌 다양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종래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열린 교육체제의 기반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학사관리를 대폭적으로 자율화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교육체제의 기반으로서 전과 및 편입학기회의 확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현 행) |
|---------------|---|---|
| ○교양과목 학점 배점기준 | • 교양과목의 학점배점기준: 전체학점의 30% | |
| ○학기당 취득학점 | • 18~21학점 | • 대학 자율로 학칙에 정하여 운영 |
| ○학점당 시간수 | • 1학기당 16시간 ※실험·실습·실기 등은 32시간 | |
| ○졸업소요학점 | • 140학점 이상 | |
| ○학기구분 및 수업일수 | • 2학기(3.1~8.31, 9.1~익년 2월말일) • 매학기 16주 이상 | • 2~5학기 범위 내에서 각 대학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매학년 30주 이상 |

대, 최소전공 이수학점 제도의 도입, 대학간 학점상호인정제도의 확대, 시간제학생(part-time student)등록제의 도입 등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중에 있다.

1. 대학의 학사관리 자율화 추진

가. 추진목적

- 각 대학의 전학이념과 대학특성, 제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라 학사체제를 다양하게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신장
- 다양한 학사체제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

적 수준을 제고하고 특성화하여 대학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록 권장한 바, 134개 대학중 66개대학(약 50%)에서 최소 전공인정학점제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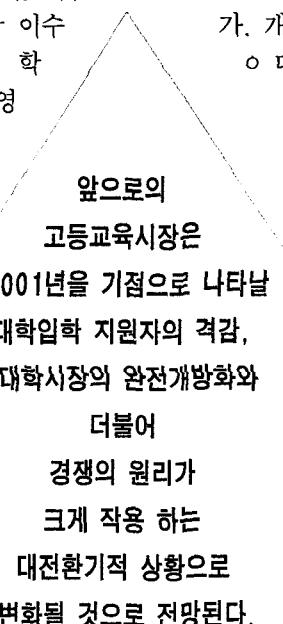
나. 학사자율화의 내용

- 종전 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학기 구분 및 수업일수, 교양과목 학점 배점 기준, 학기당 취득학점, 학점당 이수 시간수, 졸업소요학점 등을 대학 자율로 정하여 학칙에 명시·운영 토록 함.

2.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가. 개요

- 학과간 벽을 낮추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수시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며,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다양하게 받아 다전공, 복합 학문연구가 가능하도록 전공인정학점을 총이수학점의 1/4수준으로 낮춤
- 현행 졸업소요학점 140학점 중 전공학점의 비율을 현행 1/2에서 약 1/4 수준으로 낮춤



3. 대학간 학점 상호인정 제도 확대

가. 개요

- 대학간 유능한 교수진과 실험실습시설 및 도서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학문의 개방과 상호 협동을 증진

나. 현황

- 현재 대학간 협정에 의하여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의 각 대학원간, 이화여대와 포항공대와의 학점교류실시
- 전 대학의 국내외 대학간 학점교류 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대학간 학점상호인정제가 전 대학에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칙개정을 유도, 각 대학에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음

4. 대학의 전과 및 편입학기회확대

나. 현황

- 대학의 학기 및 이수학점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95. 2. 28.)하여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실시의 법적 근거 확보하고, 대학이 학칙을 변경하여 다전공이수가 가능하도록 최소전공인정 학점제를 추진토

가. 개요

- 학교간·학과간 장벽을 낮추어 학생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과·편입학 기회 확대

나. 대학편입학제도 개선('95.12) 내용

- 군입대 또는 일반휴학으로 인한 여석 발생에 대해서도 편입학 인원확대
- 정원의 학사편입학 인원확대(3학년 입학 정원의 2%→5%)

다. '96학년도 1학기 편입학 현황

- 일반편입학 : '95학년도 74교, 3,363명
→ '96학년도 100교, 18,088명
- 학사편입학 : '95학년도 82교, 1,5명
→ '96학년도 58교, 2,744명

5. 복수전공제도 운영 개선

가. 개요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학중 전공학과 등의 수를 2개학과 등으로 할 수 있음.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제5항)

나. 취지

- 학문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학문 연구의 성과를 높임.
- 다양한 전공능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취

업기회 확대

다. 운영 방안

- 복수전공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수자격, 이수시기, 전공 이수학점, 이수연한, 이수영역 및 계열의 제한 등)은 반드시 학칙 등에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6. 조기졸업제 운영

가. 제도의 목적

- 교육연한에 신축성 부여
-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 우수인력의 조기 배출

나. 운영방법

- 학기당 최대취득학점(21학점)외에 3학점을 초과 취득케 하는 방법
 -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는 방법
- * 교육법시행령 제120조 제3항 참조

7. 학위종류의 다양화

-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정한 종류의 학위만 수여할 수 있었으나, 대학의 자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96.8.23)하여 학사학위의 종류를 대학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하였으며,
- 석·박사학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학위의 종류는 다시 대학의 학칙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다.

학의 학사자율화를 추진하는 이외에도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의 도입, 시간제학생 등록제 도입등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이제 이러한 노력은 각 대학과 교수들이 교육현장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갖고 하나씩 실천해가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갈 것이다.

IV. 맷는말

교육부에서는 열린교육체제의 기반으로서 대

